

의안번호	2213166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5.10.28.
추 계 번호	25D5236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의 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650만원씩 5년간 총 8,25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16.5	16.5	16.5	16.5	16.5	8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디지털자산 이용자 및 디지털자산업자, 디지털자산 산업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2.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 방향 설정 3.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됨(제3항)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은 경력, 전문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되, 디지털자산 발행자, 디지털자산업자를 비롯한 민간위원이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23조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의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유통을 위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37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종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재산을 이관받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함)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16조 (설립)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 디지털자산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안 제118조 (회원 가입 등)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안 부칙 제3조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야 함(제1항)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함(제9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	
2	안 제23조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의무)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시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기술 표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주체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AVAIL 등 민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 중임
3	안 제37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	— (미대상)	現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민간재원(가상 자산 거래소 출연금)으로 운영 중이며, 제정안에 따른 재단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16조(설립) 안 제118조(회원 가입 등) 안 부칙 제3조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 (미대상)	제정안은 디지털자산협회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회의 설립·운영 비용은 회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역시 거래소 출연금으로 운영 중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5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본 추계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비용은 민간위원(11명)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5조¹⁾는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본 추계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최대 인원인 30명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20명으로 가정함
 - －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²⁾에서 가상자산 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15명이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위원은 9명임
 - －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인원은 11명임
 -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추가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회의는 연 6회 개최되는 것으로 하며,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

1) 제5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디지털자산 이용자 및 디지털자산업자, 디지털자산 산업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2.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 방향 설정
3.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은 경력, 전문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되, 디지털자산 발행자, 디지털자산업자를 비롯한 민간 위원이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 정부위원회 현황(<https://www.fsc.go.kr/po020401>)에 따르면, 2024년 11월 6일에 최초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4분기 1회, 2025년 1분기 2회, 2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함
- 본 추계에서 가상자산위원회의 회의실적(반기 3회)을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가 연 6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의무(안 제23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안 제37조),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설립(안 제116조, 제118조, 부칙 제3조)은 다음의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현시점에서 기술표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주체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 국가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시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 현재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민간재원(가상자산 거래소 출연금)으로 운영 중임
 -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 회원사의 자율규제기관으로, 회원인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회비⁴⁾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설립 비용 또한 협회에서 부담함⁵⁾
- 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4) 제118조(회원 가입 등)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5) 부칙 제3조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추가분(11명)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⁶⁾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15명 중 민간위원은 9명임
 - 따라서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민간 위원을 11명임
 - 회의참석수당은 1인 1회당 25만원 지급하고,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의 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2]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인원(A)	11	11	11	11	11	—
	지급단가(B)	0.25	0.25	0.25	0.25	0.25	—
	회의횟수(C)	6	6	6	6	6	—
	소계(D=A×B×C)	16.5	16.5	16.5	16.5	16.5	8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부칙 제5조(폐지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가상자산위원회의 회의실적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